

2018 회계연도
결산검사의견서

The logo for Yangsan City, featuring a stylized figure in red, green, and blue, with a yellow dot.

양 산 시
[결산검사위원회]

2018 회계연도 양산시 일반 및 특별회계 결 산 검 사 의 건 서

수신 : 양산시장

2018 회계연도 양산시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검사 의견서를
별첨과 같이 제출합니다.

○ 검사기간 : 2019년 4월 4일 ~ 4월 23일(20일간)

○ 검사위원

- 대표검사위원 : 이 용 식(양산시의회 의원)
- 검 사 위 원 : 이 상 원(전직 공무원)
- 검 사 위 원 : 최 원 석(공인회계사)
- 검 사 위 원 : 전 춘 현(세무사)

목 차

I . 감사의견서	1
II . 결산서	5
1. 세입 · 세출결산	7
1) 세입 · 세출결산 총괄	7
2) 일반회계 결산	10
3) 특별회계 결산	12
2. 예산 집행잔액 현황	14
3. 예산 이용, 전용, 이체 현황	15
4. 예비비 지출 현황	16
5. 채권 및 채무 결산	17
6. 기금현황	18
7. 재무제표	19
8. 성과보고서	21
9. 성인지결산	22
III . 결산서 부표	23
1. 세입금 미수납액 사유별 현황	25
2. 보조금 집행 현황	26
3. 세입세출외 현금 종류별 현재액 현황	27
4. 다음연도 이월사업 총괄	28
5. 공유재산 현황	29
6. 물품 현황	30
IV . 결산검사 결과	31
1. 결산 총괄	33
2. 지적 및 권고사항	39
3. 수범사례	63

I . 검 사 의 견 서

결 산 검 사 의 건 서

양산시장 귀하

2019년 4월 24일

우리 위원들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에 따라 양산시 의회로부터 양산시 2018회계연도의 세입·세출결산서 및 부속서류에 대해 결산검사 위원으로 위촉받아 2019년 4월 4일부터 2019년 4월 23일까지(20일간)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4조에 규정된 사항에 대하여 결산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우리의 결산검사는 2018회계연도 양산시의 양산의 세입·세출결산서 및 부속서류가 지방재정법 등 관계법령과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세부지침 및 지방자치단체 결산지침의 준수여부를 검사하고, 양산시의 재정규모의 적정성과 재정의 효율적인 운영여부에 대한 재무관련 회계검사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들은 검사를 실시함에 있어 세입·세출 결산서 및 부속서류가 적정한지 여부에 대하여 회계별 세입, 세출결산서와 장부 및 증거서류, 금고의 출납 등 3자가 부합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일부 세부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출서류조사 등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우리 위원들의 의견으로는 양산시가 작성하여 제출한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서 및 부속서류를 검사한 결과, 첨부한 개선 및 권고사항을 제외하고는 세입·세출결산(계속비, 명시이월비 및 사고이월비 포함), 채권 및 채무의 결산, 기금, 성과보고서, 공유재산, 물품과 금고의 결산 내용을 지방재정법 등 관련 제 규정에 따라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습니다.

양 산 시 결 산 검 사 위 원

대표위원 이 용 식

검사위원 이 상 원

검사위원 최 원 석

검사위원 전 춘 현

(서명)
(서명)
(서명)
(서명)

Ⅱ. 결 산 서

1. 세입·세출결산

1) 세입·세출결산 총괄

가. 결산상 세입·세출 처리상황

(단위:원)

회계별		예산현액	세입 (A)	세출 (B)	세 계 잉 여 금 (A-B)
합 계		1,292,677,107,355	1,294,458,710,109	1,037,349,709,229	257,109,000,880
일반회계		1,156,880,267,288	1,159,696,863,797	960,685,294,468	199,011,569,329
공기업특별회계		105,648,035,530	104,584,864,997	60,056,882,035	44,527,982,962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60,742,268,530	60,794,928,575	37,994,927,920	22,800,000,655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44,905,767,000	43,789,936,422	22,061,954,115	21,727,982,307
기타 특별회계		30,148,804,537	30,176,981,315	16,607,532,726	13,569,448,589
	양산일반산업단지관 리특별회계	9,258,956,940	9,249,988,019	3,836,760,730	5,413,227,289
	어곡일반산업단지관 리특별회계	3,940,182,660	3,934,291,060	1,922,552,290	2,011,738,770
	수질개선특별회계	6,396,632,000	6,416,880,475	6,079,903,850	336,976,625
	폐기물처리시설 사업특별회계	728,012,240	727,792,600	723,522,610	4,269,990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3,189,249,000	3,159,404,930	3,105,855,960	53,548,970
	주민소득지원자금특 별회계	1,559,908,000	1,558,278,620	257,102,220	1,301,176,400
	지하수관리 특별회계	5,075,863,697	5,130,345,611	681,835,066	4,448,510,545

나. 세입

(단위:원)

회계별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실제수납액	불납결손액	미수납액
합 계	1,292,677,107,355	1,336,540,738,783	1,294,458,710,109	2,929,933,952	39,152,094,722
일반회계	1,156,880,267,288	1,196,785,576,210	1,159,696,863,797	2,799,394,914	34,289,317,499
공기업특별회계	105,648,035,530	107,748,851,038	104,584,864,997	130,539,038	3,033,447,003
기타 특별회계	30,148,804,537	32,006,311,535	30,176,981,315	-	1,829,330,220

다. 세출

(단위:원)

회계별	예산현액	지출액	다음연도 이월액	보조금 반납금	집행잔액
합 계	1,292,677,107,355	1,037,349,709,229	154,355,088,645 (1,702,822,000)	4,180,077,757	96,792,231,724
일반회계	1,156,880,267,288	960,685,294,468	151,229,474,665 (1,702,822,000)	4,120,945,307	40,844,552,848
공기업특별회계	105,648,035,530	60,056,882,035	3,125,613,980	0	42,465,539,515
기타 특별회계	30,148,804,537	16,607,532,726	0	59,132,450	13,482,139,361

* () : 자금없는 이월

라. 세계잉여금

(단위:원)

구 분	계	다 음 연 도 이 월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	보조금 반납금	순세계 잉여금
합 계	257,109,000,880	113,836,537,496 (1,1702,822,000)	37,801,217,929	1,014,511,220	4,185,196,757	100,271,537,478
일반회계	199,011,569,329	111,215,632,026 (1,1702,822,000)	37,296,509,419	1,014,511,220	4,126,064,307	45,358,852,357
공기업특별회계	44,527,982,962	2,620,905,470	504,708,510			41,402,368,982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22,800,000,655	2,291,427,960	61,100,000			20,447,472,695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21,727,982,307	329,477,510	443,608,510			20,954,896,287
기타 특별회계	13,569,448,589				59,132,450	13,510,316,139
양산일반산업 단지관리 특별회계	5,413,227,289					5,413,227,289
어곡일반산업단 지관리 특별회계	2,011,738,770					2,011,738,770
수질개선 특별회계	336,976,625				21,006,900	315,969,725
폐기물 처리시설사업 특별회계	4,269,990					4,269,990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53,548,970				33,475,550	20,073,420
주민소득 지원자금 특별회계	1,301,176,400					1,301,176,400
지하수관리 특별회계	4,448,510,545				4,650,000	4,443,860,545

* () : 자금없는 이월

2) 일반회계 결산

가. 세입

(단위:원)

과 목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실제수납액	불납결손액	미수납액
합 계		1,156,880,267,288	1,196,785,576,210	1,159,696,863,797	2,799,394,914	34,289,317,499
지방세수입		283,200,000,000	303,229,958,460	283,202,404,080	1,891,612,750	18,135,941,630
	보통세	281,200,000,000	290,491,414,860	281,104,490,090	117,954,430	9,268,970,340
	지 난 년 도 수 입	2,000,000,000	12,738,543,600	2,097,913,990	1,773,658,320	8,866,971,290
세외수입		33,546,863,000	50,748,960,827	33,687,802,794	907,782,164	16,153,375,869
	경상적세외수입	19,355,071,000	17,429,245,951	17,243,113,840		186,132,111
	임시적세외수입	14,191,792,000	33,319,714,876	16,444,688,954	907,782,164	15,967,243,758
지방교부세		200,297,000,000	203,703,722,330	203,703,722,330		
	지방교부세	200,297,000,000	203,703,722,330	203,703,722,330		
조정교부금등		59,200,000,000	59,202,021,000	59,202,021,000		
	시·군조정교부금등	59,200,000,000	59,202,021,000	59,202,021,000		
보조금		331,125,990,000	329,277,140,150	329,277,140,150		
	국고보조금등	251,134,991,000	249,388,920,570	249,388,920,570		
	시·도비보조금등	79,990,999,000	79,888,219,580	79,888,219,580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249,510,414,288	250,623,773,443	250,623,773,443		
	보전수입등	233,868,153,288	233,868,155,093	233,868,155,093		
	내부거래	15,642,261,000	16,755,618,350	16,755,618,350		

나. 세출

(1) 기능별 분류

(단위:원)

과 목	예산현액(A)	지출액(B)	다음연도 이월액(C)	보조금 반납금(D)	집행잔액 (A-B-C-D)
합 계	1,156,880,267,288	960,685,294,468	151,229,474,665	4,120,945,307	40,844,552,848
일반공공행정	60,791,521,000	56,799,591,289	2,297,095,400	128,093,937	1,566,740,374
공공질서및안전	3,305,538,600	3,111,907,420	43,815,000	7,569,600	142,246,580
교육	9,984,398,000	9,717,300,140	0	233,253,020	33,844,840
문화및관광	94,496,412,750	59,131,392,126	34,186,120,213	202,603,013	976,297,398
환경보호	108,617,260,988	84,496,401,883	21,805,935,861	188,609,511	2,126,313,733
사회복지	311,093,767,270	300,735,332,222	5,684,636,179	2,298,033,813	2,375,765,056
보건	16,537,508,000	16,299,367,232	0	115,351,002	122,789,766
농림해양수산	45,510,475,710	38,923,283,802	4,775,298,320	435,858,574	1,376,035,014
산업·중소기업	42,707,487,880	29,931,720,110	12,524,725,142	21,397,072	229,645,556
수송및교통	252,084,416,130	196,209,815,279	48,642,155,400	478,415,500	6,754,029,951
국토및지역개발	105,599,907,960	73,894,487,228	21,269,693,150	2,070,560	10,433,657,022
예비비	12,731,588,000	0	0	0	12,731,588,000
기타	93,419,985,000	91,434,695,737	0	9,689,705	1,975,599,558

(2) 성질별 분류

(단위:원)

과 목	예산현액(A)	지출액(B)	다음연도 이월액(C)	보조금 반납금(D)	집행잔액 (A-B-C-D)
합 계	1,156,880,267,288	960,685,294,468	151,229,474,665	4,120,945,307	40,844,552,848
인건비	85,078,426,000	82,799,230,925	106,351,850	146,594,260	2,026,248,965
물건비	57,108,832,290	52,689,122,474	1,139,610,120	93,167,122	3,186,932,574
경상이전	463,116,685,940	454,798,867,360	953,684,270	2,788,907,417	4,575,226,893
자본지출	499,588,280,058	331,373,643,546	149,029,828,425	1,092,276,508	18,092,531,579
융자및출자	110,000,000	85,515,500	0	0	24,484,500
보전재원	8,830,000,000	8,801,554,300	0	0	28,445,700
내부거래	23,651,869,000	23,622,251,090	0	0	29,617,910
예비비및기타	19,396,174,000	6,515,109,273	0	0	12,881,064,727

3) 특별회계 결산

가. 세입

(단위:원)

회 계 명		예산현액	징수결정액(A)	실제수납액(B)	불납결손액(C)	미수납액(A-B-C)
합 계		135,796,840,067	139,755,162,573	134,761,846,312	130,539,038	4,862,777,223
공기업 특별회계		105,648,035,530	107,748,851,038	104,584,864,997	130,539,038	3,033,447,003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60,742,268,530	61,848,868,836	60,794,928,575	39,176,838	1,014,763,423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44,905,767,000	45,899,982,202	43,789,936,422	91,362,200	2,018,683,580
기타 특별회계		30,148,804,537	32,006,311,535	30,176,981,315	0	1,829,330,220
	양산일반산업단지 관리특별회계	9,258,956,940	9,272,163,479	9,249,988,019	0	22,175,460
	어곡일반산업 단지관리 특별회계	3,940,182,660	3,940,314,380	3,934,291,060	0	6,023,320
	수질개선 특별회계	6,396,632,000	6,416,880,475	6,416,880,475	0	0
	폐기물처리 시설사업 특별회계	728,012,240	727,792,600	727,792,600	0	0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3,189,249,000	4,884,522,710	3,159,404,930	0	1,725,117,780
	주민소득 지원자금 특별회계	1,559,908,000	1,558,278,620	1,558,278,620	0	0
	지하수관리 특별회계	5,075,863,697	5,206,359,271	5,130,345,611	0	76,013,660

나. 세출

(단위:원)

회 계 명		예산현액 (A)	지출액 (B)	다음연도 이월액 (C)	보조금반납금 (D)	집행잔액 (A-B-C-D)
합 계		135,796,840,067	76,664,414,761	3,125,613,980	59,132,450	55,947,678,876
공기업특별회계		105,648,035,530	60,056,882,035	3,125,613,980	0	42,465,539,515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60,742,268,530	37,994,927,920	2,352,527,960	0	20,394,812,650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44,905,767,000	22,061,954,115	773,086,020	0	22,070,726,865
기타 특별회계		30,148,804,537	16,607,532,726	0	59,132,450	13,482,139,361
	양산일반산업단지관 리특별회계	9,258,956,940	3,836,760,730	0	0	5,422,196,210
	어곡일반산업단지관 리특별회계	3,940,182,660	1,922,552,290	0	0	2,017,630,370
	수질개선특별회계	6,396,632,000	6,079,903,850	0	21,006,900	295,721,250
	폐기물처리시설 사업특별회계	728,012,240	723,522,610	0	0	4,489,630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3,189,249,000	3,105,855,960	0	33,475,550	49,917,490
	주민소득지원자금특 별회계	1,559,908,000	257,102,220	0	0	1,302,805,780
	지하수관리 특별회계	5,075,863,697	681,835,066	0	4,650,000	4,389,378,631

2. 예산 집행잔액 현황

(단위:원)

회계별	집행잔액	원인별				
		보조금 정산잔액	예산 절감액	계획변경 등 집행잔액	지출잔액	예비비
합 계	96,792,231,724	4,308,349,061	6,000,000	48,511,429,580	17,678,846,083	26,287,607,000
일반회계	40,844,552,848	4,250,281,981	6,000,000	9,841,102,580	14,015,580,287	12,731,588,000
공기업 특별회계	42,465,539,515	0	0	38,660,327,000	1,705,212,515	2,100,000,000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20,394,812,650	0	0	18,740,052,000	1,154,760,650	500,000,000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22,070,726,865	0	0	19,920,275,000	550,451,865	1,600,000,000
기타 특별회계	13,482,139,361	58,067,080	0	10,000,000	1,958,053,281	11,456,019,000
양산일반산업단지관리 특별회계	5,422,196,210	0	0	0	152,453,210	5,269,743,000
어곡일반산업단지관리 특별회계	2,017,630,370	0	0	0	102,209,370	1,915,421,000
수질개선 특별회계	295,721,250	301,000	0	0	1,186,250	294,234,000
폐기물사업처리시설사업 특별회계	4,489,630	0	0	0	760,630	3,729,000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49,917,490	916,080	0	0	49,001,410	0
주민소득지원자금 특별회계	1,302,805,780	0	0	0	1,302,805,780	0
지하수관리 특별회계	4,389,378,631	56,850,000	0	10,000,000	349,636,631	3,972,892,000

3. 예산 이용, 전용, 이체 현황

(단위:원)

구 분	건 수	금 액	비 고
합 계	438	78,303,299,990	
이 용	0	0	
전 용	5	55,190,000	일반회계
이 체	433	78,248,109,990	일반회계

* 특별회계 이용, 전용, 이체 내역 없음

4. 예비비 지출현황

(단위:원)

과 목			지출결정액	지출액	이월액	지출잔액	예비비지출 사 유
조 직	세 부	통 계 목					
합 계(11건)			1,601,304,000	1,171,526,880	287,799,000	141,978,120	
행정과	제8대 시장 취임행사	사무관리비	4,000,000	3,278,000		722,000	행정과-14966(2018.6.25.) 민선7기 제8대 시장 취임 관련 소요경비
행정과	제8대 시장 취임행사	행사운영비	4,700,000	2,115,000		2,585,000	행정과-14966(2018.6.25.) 민선7기 제8대 시장 취임 관련 소요경비
행정과	제8대 시장 취임행사	행사실비보상 금	4,100,000	3,717,600		382,400	행정과-14966(2018.6.25.) 민선7기 제8대 시장 취임 관련 소요경비
행정과	제8대 시장 취임행사	시설비	3,500,000	3,290,000		210,000	행정과-14966(2018.6.25.) 민선7기 제8대 시장 취임 관련 소요경비
세무과	회원제골프장 원형보 전임야 현황조사	연구용역비	54,953,000	48,634,600		6,318,400	세무과-7375(2018.6.4.)호 조세심판원의 골프장 원형 보전임야 재조사 결정에 따른 골프장 현황조사 용역비 필요
자원순환과	자원회수시설 관리.운 영	민간위탁금	685,000,000	685,000,000			자원순환과-24645(2018.10.30.) 자원회수시설 산소 제조설비의 예기치 못한 고장으로 인한 긴급 수리비
공원과	새들천 근린공원 태풍 피해복구	시설비	300,000,000	12,201,000	287,799,000		공원과-12120(2018.11.1.) 태풍 콩레이 피해로 인한 새들천 산책로 긴급복구공사를 위한
안전총괄과	민간재해 지원	민간인재해및 복구활동보상 금	9,451,000	8,393,990		1,057,010	안전총괄과-19878(2018.10.23.) 제25호 태풍 콩레이 피해와 관련하여 민간재해지원금 지급을 위한
농업기술과	조류인플루엔자 방역	기간제근로자 등보수	25,200,000	24,507,280		692,720	농업기술과-4822(2018.3.15.) 우리 시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 차단방역 강화를 위한 거점소독시설 동 방 역 인원 인건비
농업기술과	조류인플루엔자 방역	기간제근로자 등보수	50,400,000	41,940,840		8,459,160	농업기술과-7871(2018.4.20.) 구제역 및 고병원성 시 차단 방역강화를 위한 거점소독시설 등 방역인원 인건 비
(출)도시건설과	덕계천 위험지구 용벽 정비공사	시설비	460,000,000	338,448,570		121,551,430	도시건설과-13649(2018.7.13.) 제7호 태풍 뿌라베를 피해 관련 덕계천 위험지구 용벽 정비공사

5. 채권 및 채무 결산

1) 채권

(단위:원)

회계별	채권종류	전년도말 현재액	당해연도 발생액	당해연도 소멸액	당해연도말 현재액
합 계		8,729,298,260	3,102,181,770	3,211,775,650	8,619,704,380
일반회계	계	4,350,744,150	339,815,500	1,058,130,720	3,632,428,930
	보증금채권	391,650,000	74,300,000	0	465,950,000
	융자금채권	3,959,094,150	265,515,500	1,058,130,720	3,166,478,930
특별회계	계	4,378,554,110	2,762,366,270	2,153,644,930	4,987,275,450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기타채권	442,194,110	1,296,662,860	24,631,520	1,714,225,450
주민소득지원자 금 특별회계	융자금채권	3,936,360,000	1,465,703,410	2,129,013,410	3,273,050,000

2) 채무 : 없음

6. 기금 현황

(단위:원)

구 분	2017년말 현재액	조성액	사용액	2018년말 현재액
계(13종)	44,060,896,574	10,165,720,868	4,828,556,452	49,398,060,990
통합관리기금	16,352,654,270	242,477,080	490,515,390	16,104,615,960
재정안정화기금		4,054,345,200		4,054,345,200
전통시장 주차장 관리기금	113,073,486	12,862,755		125,936,241
중소기업육성기금	10,219,610,640	2,063,416,700	1,670,278,110	10,612,749,230
식품진흥기금	236,181,200	69,509,200	64,427,000	241,263,400
폐기물처리시설주변지역주민지원기금	1,739,246,136	924,175,511	727,319,617	1,936,102,030
자활기금	1,738,826,814	142,379,989		1,881,206,803
장애인복지기금	533,965,977	7,203,560	67,497,705	473,671,832
지역문화진흥기금	1,642,695,878	24,275,002	54,997,500	1,611,973,380
체육기금	2,253,790,387	33,366,247	55,724,330	2,231,432,304
재난관리기금	8,852,309,274	2,567,425,760	1,480,433,800	9,939,301,234
옥외광고발전기금	361,271,392	24,097,154	213,363,000	172,005,546
투자유치진흥기금	17,271,120	186,710	4,000,000	13,457,830

7. 재무제표

1) 재정상태 및 증감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7	2018	전년 대비 증감(-)	
			금 액	비 율
자 산	4,753,455	5,086,581	333,126	7.00
Ⅰ. 유동자산	331,239	320,920	-10,319	-0.03
Ⅱ. 투자자산	9,522	13,605	4,083	70.00
Ⅲ. 일반유형자산	188,395	213,049	24,654	88.00
Ⅳ. 주민편의시설	768,932	846,255	77,323	91.00
Ⅴ. 사회기반시설	3,449,368	3,687,422	238,054	94.00
Ⅵ. 기타비유동자산	5,999	5,330	-669	-13.00
부 채	96,451	90,898	-5,553	6.00
Ⅰ. 유동부채	8,831	6,208	-2,623	-42.00
Ⅱ. 장기차입부채			0	
Ⅲ. 기타비유동부채	87,620	84,690	-2,930	-3.00
순 자 산	4,657,004	4,995,683	338,679	7.00
Ⅰ. 고정순자산	4,330,629	4,674,797	344,168	7.00
Ⅱ. 특정순자산	27,709	33,315	5,606	17.00
Ⅲ. 일반순자산	298,666	287,571	-11,095	-4.00

2) 재정운영 및 증감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7	2018	전년 대비 증감(-)	
			금 액	비 율
Ⅰ. 사업순원가 (가-나)	309,024	348,976	39,952	11.00
가. 사업총원가	628,644	678,387	49,743	7.00
나. 사업수익	319,620	329,411	9,791	3.00
Ⅱ. 관리운영비	89,781	104,115	14,334	14.00
Ⅲ. 비배분비용	52,661	54,362	1,701	3.00
Ⅳ. 비배분수익	35,259	27,924	-7,335	-26.00
Ⅴ. 재정운영순원가 (Ⅰ+Ⅱ+Ⅲ-Ⅳ)	416,207	479,529	63,322	13.00
Ⅵ. 일반수익	633,385	664,910	31,525	5.00
Ⅶ. 재정운영결과 (Ⅴ-Ⅵ)	-217,178	-185,382	31,796	-17.00

3) 순자산변동표

직전연도 2017년 1월 1일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

(단위: 원)

과 목	직전연도(2017년)					
	일반회계	기 타 특별회계	기금회계	지방공기업 특 별 회 계	내부거래	계
I. 기초순자산	3,851,464,312,963	41,287,466,582	32,582,339,747	526,429,075,043	-352,639,988,390	4,099,123,205,945
II. 재정운영결과	-222,612,179,891	-1,065,592,897	1,923,434,700	4,576,044,194		-217,178,293,894
III. 순자산의 증가	382,243,582,448	305,537,481		20,512,355,813	-8,892,464,900	394,169,010,842
전기오류수정이익				892,854,806		892,854,806
회계기준변경으로생긴누적이익						
재산이관·관리전환으로생긴자산증가	270,000					270,000
양여·기부로생긴자산증가	218,849,856,045					218,849,856,045
기타순자산의증가	163,393,456,403	305,537,481		19,619,501,007	-8,892,464,900	174,426,029,991
IV. 순자산의 감소	51,510,664,905	673,585,765		1,282,450,500		53,466,701,170
전기오류수정손실						
회계기준변경으로생긴누적손실						
재산이관·관리전환으로생긴자산감소						
양여·기부로생긴자산감소	4,000					4,000
기타순자산의감소	51,510,660,905	673,585,765		1,282,450,500		53,466,697,170
V. 기말순자산(I-II+III-IV)	4,404,809,410,397	41,985,011,195	30,658,905,047	541,082,936,162	-361,532,453,290	4,657,003,809,511

당해연도 2018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

(단위: 원)

과 목	당해연도(2018년)					
	일반회계	기 타 특별회계	기금회계	지방공기업 특 별 회 계	내부거래	계
I. 기초순자산	4,404,809,410,397	41,985,011,195	30,658,905,047	541,082,936,162	-361,532,453,290	4,657,003,809,511
II. 재정운영결과	-183,518,517,465	-32,813,386	-5,291,351,092	3,461,102,017	0	-185,381,579,926
III. 순자산의 증가	155,874,846,844	12,015,640	30,000,000	23,922,059,512	-18,992,515,242	160,846,406,754
전기오류수정이익						
회계기준변경으로생긴누적이익						
재산이관·관리전환으로생긴자산증가	60,375,295					60,375,295
양여·기부로생긴자산증가	108,307,201,206					108,307,201,206
기타순자산의증가	47,507,270,343	12,015,640	30,000,000	23,922,059,512	-18,992,515,242	52,478,830,253
IV. 순자산의 감소	7,546,757,450	1,716,130				7,548,473,580
전기오류수정손실						
회계기준변경으로생긴누적손실						
재산이관·관리전환으로생긴자산감소	60,375,295					60,375,295
양여·기부로생긴자산감소	1,935,119					1,935,119
기타순자산의감소	7,484,447,036	1,716,130				7,486,163,166
V. 기말순자산(I-II+III-IV)	4,736,656,017,256	42,028,124,091	35,980,256,139	561,543,893,657	-380,524,968,532	4,995,683,322,611

8. 성과보고서

실국명	성과목표						
	전략 목표수	정책사업목표		성과달성도			
		개수	지표수(A)	초과달성(B)	달성(C)	미달성	달성률 (B+C/A)*100
계	17	132	235	35	163	37	84.2
기획관	1	3	4	0	4	0	100.0
공보관	1	1	3	1	2	0	100.0
감사관	1	1	2	0	2	0	100.0
행정국	1	11	22	1	18	3	86.3
경제환경국	1	17	42	6	28	8	80.9
복지문화국	1	20	38	9	21	8	78.9
안전도시국	1	13	21	1	18	2	90.4
개발주택국	1	5	8	2	4	2	75.0
양방향노화산업국	1	6	9	1	6	2	77.7
보건소	1	6	15	5	9	1	93.3
농업기술센터	1	6	10	2	8	0	100.0
상하수도사업소	1	5	7	1	5	1	85.7
차량등록사업소	1	1	5	3	2	0	100.0
시립박물관	1	2	2	0	1	1	50.0
시립도서관	1	1	2	0	2	0	100.0
웅상출장소	1	33	42	2	31	9	78.5
읍면동	0	0	0	0	0	0	0.0
의회사무국	1	1	3	1	2	0	100.0

9. 성인지결산

□ 총괄표

(단위 : 개, 원, %)

회 계 별	사업개수	예산현액	지출액	집행률
총계	162	225,777,829,100	201,089,349,562	89.07 %
일반회계	160	223,574,649,100	199,364,073,952	89.17 %
기타특별회계	0	0	0	0.00 %
기금	2	2,203,180,000	1,725,275,610	78.31 %

□ 사업별 총괄표

(단위 : 개, 원, %)

회 계 별		사업개수	예산현액	지출액	집행률
총 계		162	225,777,829,100	201,089,349,562	89.07 %
양성평등정책추진사업	소계	57	119,279,243,500	113,963,992,032	95.54 %
	일반회계	56	117,131,063,500	112,293,713,922	95.87 %
	기타특별회계	0	0	0	0.00 %
	기금	1	2,148,180,000	1,670,278,110	77.75 %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소계	85	99,198,260,600	79,968,623,216	80.61 %
	일반회계	85	99,198,260,600	79,968,623,216	80.61 %
	기타특별회계	0	0	0	0.00 %
	기금	0	0	0	0.00 %
자치단체특화사업	소계	20	7,300,325,000	7,156,734,314	98.03 %
	일반회계	19	7,245,325,000	7,101,736,814	98.02 %
	기타특별회계	0	0	0	0.00 %
	기금	1	55,000,000	54,997,500	100.00 %

Ⅲ. 결 산 서 부 표

1. 세입금 미수납액 사유별 현황

(단위:원)

회계 별	구 분	미수납액	사 유 별									
			무재산	행방불명	납세태만	폐업또는부도	채무자회생법에 의한 유예	격리또는입원	소송 계류	국외이주	자금압박	기 타
일반 회계	합 계	36,118,647,719	5,786,314,561	56,414,470	12,331,701,151	3,096,122,551	113,919,280	3,017,480		6,213,380	6,582,832,571	8,142,112,282
	소 계	34,289,317,499	5,786,314,561	56,414,470	12,304,309,241	3,095,315,681	113,919,280	3,017,480		6,213,380	6,582,832,564	6,340,980,842
	지방세수입	18,135,941,630	3,739,045,200	38,520,510	6,313,659,750	2,129,627,660	113,919,280	3,017,480		6,213,380	2,929,450,340	2,862,488,030
특별 회계	세외수입	16,153,375,869	2,047,269,361	17,893,960	5,990,649,491	965,688,021					3,653,382,224	3,478,492,812
	소 계	1,829,330,220			27,391,910	806,870					7	1,801,131,440
	양산일반산업 단지관리 특별회계	22,175,460			21,947,390	228,070						
특별 회계	어곡일반산업 단지관리 특별회계	6,023,320			5,444,520	578,800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1,725,117,780										1,725,117,780
	지하수관리 특별회계	76,013,660										76,013,660

2. 보조금 집행현황

(단위:원)

구분	구분	보조금수령액 ①	집행액 ②	이월액 ③	집행잔액 ④=①-②-③
총계	합계	482,821,402,150	418,529,174,149	57,902,266,240	6,391,165,761
	국비	228,071,636,570	213,681,495,215	12,264,635,079	2,125,506,276
	도비	79,836,042,580	69,750,818,905	8,700,018,322	1,386,409,353
	시비	174,913,723,000	135,096,860,029	36,937,612,839	2,879,250,132
일반회계	소계	476,099,626,150	411,924,597,679	57,902,266,240	6,273,966,231
	국비	221,567,962,570	207,225,607,745	12,264,635,079	2,077,719,746
	도비	79,715,732,580	69,641,854,825	8,700,018,322	1,375,063,433
	시비	174,815,931,000	135,057,135,109	36,937,612,839	2,821,183,052
특별회계	소계	6,721,776,000	6,604,576,470	0	117,199,530
	국비	6,503,674,000	6,455,887,470	0	47,786,530
	도비	120,310,000	108,964,080	0	11,345,920
	시비	97,792,000	39,724,920	0	58,067,080

* 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 제외

3. 세입·세출외현금 종류별 현재액

(단위:원)

종류별 구분	전년도말 현재액㉠	당해연도 증감액			당해연도말 현재액㉠+㉡
		계 ㉡=㉠-㉢	증가액㉣	지출액㉤	
합 계	소 계	△ 163,280,014	18,749,115,592	18,912,395,606	1,932,635,011
	장 기	△ 110,891,920	85,046,960	195,938,880	57,649,663
	단 기	△ 52,388,094	18,664,068,632	18,716,456,726	1,874,985,348
보 증 금	소 계	△ 135,080,657	426,032,291	561,112,948	581,956,774
	장 기	8,641,730	84,580,610	75,938,880	136,851,453
	단 기	△ 143,722,387	341,451,681	485,174,068	445,105,321
보 관 금	소 계	△ 28,325,247	18,245,517,215	18,273,842,462	1,349,564,068
	장 기	△ 119,533,650	466,350	120,000,000	△ 79,201,790
	단 기	91,208,403	18,245,050,865	18,153,842,462	1,428,765,858
집 중 금 등 기 타	소 계	125,890	77,566,086	77,440,196	1,114,169
	장 기				
	단 기	125,890	77,566,086	77,440,196	1,114,169

4. 다음연도 이월사업 총괄

○ 총괄(일반+특별+기금)

(단위:원)

구분	건수	계	국비	도비	시비
계	335	154,355,088,645	31,014,086,321	9,607,607,230	113,733,395,094
2018년 명시이월	236	115,539,359,496	22,607,628,967	8,598,572,467	84,333,158,062
2018년예산 사고이월	24	4,237,945,872	971,950,377	107,997,958	3,157,997,537
2017년(명시) 사고이월	66	33,563,272,057	6,732,130,473	807,125,687	26,024,015,897
계속비이월	9	1,014,511,220	702,376,504	93,911,118	218,223,598

*자금없는 이월액(명시이월) 포함

○ 일반회계

(단위 : 원)

구분	건수	계	국비	도비	시비
계	324	151,229,474,665	31,014,086,321	9,607,607,230	110,607,781,114
2018년 명시이월	229	112,918,454,026	22,607,628,967	8,598,572,467	81,712,252,592
2018년예산 사고이월	21	3,794,337,362	971,950,377	107,997,958	2,714,389,027
2017년(명시) 사고이월	65	33,502,172,057	6,732,130,473	807,125,687	25,962,915,897
계속비이월	9	1,014,511,220	702,376,504	93,911,118	218,223,598

*자금없는 이월액(명시이월) 포함

○ 특별회계

(단위 : 원)

구분	건수	계	국비	도비	시비
계	11	3,125,613,980	-	-	3,125,613,980
2018년 명시이월	7	2,620,905,470	-	-	2,620,905,470
2018년예산 사고이월	3	443,608,510	-	-	443,608,510
2017년(명시) 사고이월	1	61,100,000	-	-	61,100,000

○ 기금(이월사업 없음)

○ 자금없는 이월(일반회계)

(단위 : 원)

사업명	전체이월액(A+B)	자금없는 이월액(A)			명시이월액(B)
		계	국비	도비	
계	2,632,818,890	1,702,822,000	1,609,822,000	93,000,000	929,996,890
동면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839,540,020	818,000,000	725,000,000	93,000,000	21,540,020
대석권역단위종합개발사업	1,793,278,870	884,822,000	884,822,000	-	908,456,870

5. 공유재산 현황

(1) 용도별 현황

(단위 : 개,㎡, 천원)

구분 용도별	전년도 말 현재액			당해연도 중 증감액						당해연도 말 현재액		
	수	면적	가액	수	면적	가액	수	면적	가액	수	면적	가액
합계	620,721	32,373,302.84	2,993,188,713.870	16,160	1,300,325.89	351,637,205,390	670	184,756.57	29,917,473,452	636,211	33,488,872.16	3,314,908,445,808
행정재산	605,155	19,624,746.96	2,988,484,706.113	16,128	1,292,543.56	351,012,173,830	660	171,275.08	29,164,829,779	620,623	20,746,015.44	3,290,332,050,164
일반재산	15,566	12,748,555.88	24,704,007,757	32	7,782.33	625,031,560	10	13,481.49	752,643,673	15,588	12,742,856.72	24,576,395,644

(2) 종류별 현황

(단위 : 개,㎡, 천원)

구분	전년도 말 현재액			당해연도 중 증감액						당해연도 말 현재액		
	수	면적	가액	수량	면적	가액	수량	면적	가액	수	면적	가액
합계	620,721	32,373,302.84	2,993,188,713.870	16,160	1,300,325.89	351,637,205,390	670	184,756.57	29,917,473,452	636,211	33,488,872.16	3,314,908,445,808
토지	소계	15,311	31,882,782.87	1,148	1,293,067.74	221,230,094,743	660	184,434.42	28,972,306,452	15,799	32,991,416.19	1,707,995,198,041
	대	1,456	407,967.44	159	23,452.36	14,997,318,631	119	24,288.42	11,260,018,786	1,496	407,131.38	214,930,397,451
	전	1,113	217,752.73	113	31,204.84	11,409,634,533	80	15,776.30	5,233,099,556	1,146	283,181.27	39,698,072,428
	답	2,562	705,058.83	284	82,241.64	30,360,084,641	115	30,357.40	5,803,022,705	2,731	756,943.07	113,447,186,931
건물	임야	1,591	20,493,868.94	115	223,014.15	20,691,105,620	35	42,666.08	1,581,116,327	1,671	20,674,217.01	101,470,893,780
	기타	8,589	10,058,134.93	477	933,154.75	143,771,951,318	311	71,346.22	5,095,049,078	8,755	10,919,943.46	1,238,448,647,451
	소계	433	490,010.83	13	7,030.89	9,081,036,220	2	322.15	220,826,690	444	496,719.57	460,750,650,186
	사무소	169	140,513.67	3	2,596.97	1,293,437,760	-	-	-	172	143,110.64	154,552,934,880
물	주택	24	1,716.38	-	-	-	2	322.15	220,826,690	22	1,394.23	902,830,532
	기타	240	347,780.78	10	4,433.92	7,787,598,460	-	-	-	250	352,214.70	305,294,884,774
	입목축	586,742	-	13,824	-	1,541,587,736	-	-	-	600,566	-	19,564,811,748
	공작물	18,028	-	1,173	-	119,618,486,691	8	-	724,340,310	19,193	-	1,116,774,168,743
기계기구	-	-	-	-	-	-	-	-	-	-	-	-
선박	-	-	-	-	-	-	-	-	-	-	-	-
항공기	-	-	-	-	-	-	-	-	-	-	-	-
무체재산	199	-	6,993,483,090	-	-	-	-	-	-	199	-	6,993,483,090
유가증권(주식,채권)	2	-	2,200,000,000	-	-	-	-	-	-	2	-	2,200,000,000
용의물권	4	465.14	360,000,000	2	227.26	166,000,000	-	-	-	6	692.40	526,000,000
회원권	2	44.00	104,134,000	-	-	-	-	-	-	2	44.00	104,134,000

6. 매월 평균

(단위: 원)

매월 평균 인건비		매월 평균 내역				매월 평균	
		종가		합수			
합수	평균	합수	평균	합수	평균	합수	평균
1,125	12,771,262,111	117	3,111,877,820	50	670,224,016	1,192	15,212,915,915

IV. 결산검사 결과

1. 결산 총괄

□ 전년대비 결산 현황

(단위:백만원)

구분	년도별	예산 현액	세 입 결산액	세 출 결산액	결산상 잉여금					
					계	명시 이월	사고 이월	계속비 이월	보조금 반납금	순세계 잉여금
합계	2018년	1,292,677	1,294,458	1,037,349	257,109	113,836	37,801	1,014	4,185	100,271
	2017년	1,196,905	1,201,290	919,462	281,827	134,812	29,784	1,464	6,100	109,667
일반 회계	2018년	1,156,880	1,159,696	960,685	199,011	111,215	37,296	1,014	4,126	45,358
	2017년	1,071,391	1,077,572	843,704	233,868	132,258	28,756	1,464	6,039	65,351
공기업 특별 회계	2018년	105,648	104,584	60,056	44,527	2,620	504	-	-	41,402
	2017년	94,283	92,289	58,403	33,886	2,554	-	-	-	31,332
기타 특별 회계	2018년	30,148	30,176	16,607	13,569	-	-	-	59	13,510
	2017년	31,231	31,429	17,356	14,074	-	1,028	-	61	12,984

- 2018회계연도 예산 총규모는 전년보다 약 7.4%가 증가한 1,292,677백만원입니다. 세입부문은 전년대비 7.8%가 증가한 1,294,458백만원을 수납하였고, 세출부문은 전년대비 12.8%가 증가한 1,037,349백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잉여금은 257,109백만원이 발생되어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 잉여금 내역은 명시이월 113,836백만원, 사고이월 37,801백만원, 계속비이월 1,014백만원, 보조금 반납금 4,185백만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순세계 잉여금은 100,271백만원입니다.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4조에 의거 기금결산, 재무제표, 성과보고서를 비롯하여 결산개요, 세입·세출의 결산, 결산서의 첨부서류, 금고의 결산은 아래의 지적사항을 제외하고는 전반적으로 결산내용을 적정하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 최근 5년간 예산편성 현황

(단위:백만원)

구 분	당초예산 (A)	추경예산(B)		최종예산 (C=A+B)	다음년도이월액(D)		예산현액 (E=C+D)
		금액	비율		금액	비율	
2018년	894,804	99,598	8.6%	994,402	149,527	12.9%	1,156,880
2017년	772,314	181,769	17%	954,083	162,478	15.2%	1,071,391
2016년	740,185	156,370	16%	896,555	112,225	11.5%	976,228
2015년	627,996	100,568	12.6%	728,564	74,199	9.3%	800,965
2014년	563,848	104,798	13.9%	668,646	72,310	9.6%	752,860

※ 일반회계 기준 / 비율 : 예산현액 대비

- 2014년부터 꾸준히 증가 하던 예산현액 대비 추경예산 비중이 2018년에는 감소 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매년 증가 추세를 보이던 다음년도 이월액도 2018년에는 감소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추경예산 비중이 감소한 부분은 세입·세출을 추계함에 있어 누락 없이 편성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월액은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최소화 하도록 노력해야하며 매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던 이월액이 2019년에는 감소된 부분은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을 준수하고자 노력한 부분으로 여겨집니다.
- 예산 편성함에 있어 이월액의 최소화와 추가경정예산 비중이 감소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해줄 것을 당부 드립니다.

□ 최근 5년간 잉여금 추이 현황

(단위:백만원)

구 분	잉여금		이월금	보조금 반납금	순세계잉여금	
	소 계	전년대비			금 액	전년대비
2018년	199,011	-14.9%	149,527	4,126	45,358	-30.6%
2017년	233,868	49.2%	162,478	6,039	65,351	37.4%
2016년	156,699	14.1%	112,225	3,595	40,879	-27.8%
2015년	137,279	36.7%	74,199	6,920	56,160	246%
2014년	100,429	-	72,310	5,290	22,828	-

※ 일반회계 기준

- 2015년부터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던 잉여금의 비율이 올해는 전년 대비 14.9% 감소하였습니다. 이에 비례해서 순세계잉여금도 전년대비 30.6% 감소하였습니다.
- 2018 회계연도 결산 결과 순세계금잉여금은 45,358백만원입니다. 순세계 잉여금은 잉여금 중 이월금 및 국비 집행잔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이는 세입 예산액보다 실제 수입이 많은 경우(초과세입)와 세출예산액 보다 실제 적게 지출한 경우(집행잔액)에 발생합니다.
- 잉여금의 발생 원인에는 이월액 증가, 보조금 반납금, 세출절감, 세수증가, 집행 잔액 중 불용액발생 등 여러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2014 회계연도부터 2017 회계연도까지 매년 평균 30% 증가하던 잉여금이 2018년에는 14.9% 감소 하였습니다. 이는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 세입·세출 추계가 예년에 비해

정확하게 추계가 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으며 또한, 세출예산 집행에 있어 불용액 발생이 감소되고 있다는 점은 균형재정 목표 달성에 있어 긍정적인 지표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 각 부서에서는 앞으로도 세출예산을 과다하게 요구하지 않도록 하고, 예산 부서에는 요구된 세출예산 심사를 강화하여 순세계잉여금을 줄여가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와 더불어 적극적인 사업발굴과 투자를 통해 균형재정 목표 달성에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제표 총괄

- 재무제표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상황을 나타내는 중요한 요소로서 2016 회계연도부터 결산검사 대상에 추가된 후 올해 3회차로 재무결산 검사를 실시하여 재무제표의 전반적인 적정성에 대하여 검토하였으며 중요하게 위배되어 있는 점이 발견되지 아니하였으며 그 결과를 다음과 같이 요약합니다.

< 재정상태 현황 >

(단위:백만원)

구 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총자산	3,879,744	4,065,944	4,216,653	4,753,455	5,086,581
총부채	215,088	185,195	117,530	96,451	90,898
순자산	3,664,656	3,880,749	4,099,123	4,657,004	4,995,683

- **안정적인 자산 증가** : 양산시의 자산은 매년 안정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방세 등의 세입이 하반기에 편중되어 들어오는 지방재정의 수입 구조상 다음연도 상반기의 안정적인 재정운영을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잉여자금을 확보하는 것이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필요합니다. 하지만 정부회계의 특성상 많은 자금을 쌓아놓는 것은 비판의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적정수준의 현금을 유지하여 계획적·안정적으로 재정운영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해야합니다.
- **자산대비 부채비율의 감소** : 부채는 보조금 집행잔액, 세입세출외현금, 퇴직급여충당부채 등 타 자치단체와 공통되는 일반적인 항목으로 되어 있고 부채 총계는 908억원으로 자산 5조 865억원 규모에 비해 아주 낮은 비율이며 재정 건정성 성과유지에 실효적 재정관리 노력이 충실히 보입니다.

< 재정운영 현황 >

(단위:백만원)

구 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총수익	673,096	755,254	871,817	988,264	1,001,127
총비용	588,754	608,497	671,646	771,086	815,745
운영차액	84,342	146,757	200,171	217,178	185,382

- 양산시의 수익과 비용은 모두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운영차액은 2014년부터 꾸준히 증가하다가 2018년에 소폭 감소하였습니다.
- 수입에 대응하는 효율적인 비용지출 필요 : 2018년에 소폭감소한 원인은 사회복지비용 증가에 따른 민간 등 이전비용 및 인건비 등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한 비용증가에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재정운영 결과는 기업에서 경영 성과를 나타내는 것과 달리 지역주민의 복지 증진과 지역경제의 활성화 등 자치행정 목표를 효율적·효과적으로 수행하였는지가 중요하므로 수익에 대응하는 비용이 바람직합니다. 하지만 무분별한 지출 등 잘못된 재정운영은 주민 전체의 복지를 저해하게 될 뿐 아니라 지역개발을 정체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가 있으므로 사회, 경제, 환경의 변화에 따라 최대의 공공서비스를 창출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해야합니다.

2. 지적 및 권고사항

□ 국·도비 예산액과 보조금수령 금액과의 불일치

○ 현 황

(단위:백만원)

구 분	총사업비 (예산액)	수령액	차 액		
			소 계	초과수령	감액수령
2018	331,125	329,277	△1,848	176	△2,024
2017	307,468	311,375	3,911	4,588	△677
증감액	23,657	△17,902	△5,759	△4,412	△1,347

※일반회계 기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 포함)

- 상기 도표는 총사업비(예산액)와 보조금(국비, 도비) 실제 수령액을 나타내고 있으며 또한, 예산액과 보조금 실수령액 차액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2018 회계연도의 경우 국비가 1,746백만원, 도비가 102백만원으로 총 24개 사업에 1,848백만원의 불부합이 발생하였습니다.
- 여기서 총 24개 사업 중 20개 사업은 2,024백만원은 예산서에는 존재하나 실제 현금이 없는 예산으로 즉, 예산액 대비 보조금이 적게 수령된 경우입니다. 또한, 4개 사업은 176백만원은 예산서에는 존재하지 않으나 현금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사유별로 보면 보조금 변경내시 시달지연, 제3회 추경예산 후 결정 통보 및 교부, 가내시 통보에 의한 예산편성 등으로 인해 불부합이 발생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자금없는 이월로 보조금이 교부되지 않은 동면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818백만원)과 대석 권역단위 종합개발 보조 사업비(884백만원)를 합친 금액은 1,702백만원으로 감액 수령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2017 회계연도의 경우 전년도 자금없는 이월로 2017년 당해연도에 교부된 사업비가 11건, 4,584백만원으로 인해 예산현액 대비 3,911백만원 초과 수령한 것으로 보이고 있으며 반면 2018 회계연도의 경우 전년도 자금없는 이월이 존재하지 않아 이월 교부된 사업비는 없으나 차기연도 자금없는 이월에 따른 미수령액 1,702백만원으로 인해 보조금이 예산대비 1,848백만원 감액 수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문제점 및 개선 · 권고사항

- 전년도 차액 677백만원 비교하여 예산액과 보조금의 수령액 차액 격차가 2,063백만원 줄어든 것은 아주 고무적인 현상이나 국·도비 보조금은 당초 예산목적이 정하여 시달되며 사업비는 전년도 예산편성 당시 확정 내시된 보조금 금액 공문 통보에 의하여 편성하고 당해연도에 보조금이 교부되면 집행하고 보조금 총사업비(예산액) 금액과 보조금 교부금액은 일치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보조금이 세입계좌에 입금되면 간주처리를 통한 세입조치는 비교적 원활하게 추진되고 있으나 일부 부서에서는 다소 무관심으로 인해 변동 사항을 늦게 인지하여 추경예산에 반영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사례도 있으니, 예산부서와 세입부서 그리고 담당부서가 합동으로 정기 또는 수시로 보조금 집행상황을 대사하여 회계연도가 종료되기 전 증·감 사항을 정확히 정산하여 매년 결산에서 발생하는 불부합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권고합니다.

□ 교부세 실제수납액 예산미반영

○ 현 황

(단위:백만원)

세입과목	예산현액	실제수납액	차 액
합 계	7,200	10,606	3,406
부동산교부세 (세무과)	4,700	6,742	2,042
특별교부세 (기획예산담당관)	0	61	61
특별교부세 (자원순환과)	0	3	3
특별교부세 (건설과)	500	1,100	600
특별교부세 (하수과)	300	650	350
특별교부세 (출.도시건설과)	1,700	2,050	350

- 부동산교부세의 경우 예산현액과 실제수납액 차액이 2,042백만원으로 격차가 상당히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 특별교부세 또한 전액 예산에 반영하지 못한 사례(2건, 64백만원)와 예산액과 실제수납액 차액이 발생한 사례가 3건, 1,300백만원 발생하였습니다.

○ 문제점 및 개선 · 권고사항

- 세입의 초과 수령은 순세계잉여금의 증가 요인으로 작용하며 순세계잉여금의 발생은 균형재정 실현에 반하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합리적인 수준의 세입 예산편성이 이루어지도록 보다 정밀한 세입추계를 권고합니다.
- 부동산교부세의 경우 정확한 추계가 힘든 부분은 있지만 전년도 수납액 등을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 아울러 세입부서와 예산부서의 긴밀한 상호협의를 통해 초과 세입이 과다하게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 세입환급금 최소화 노력

○ 현 황

(단위:백만원)

구 분	연도	징수결정액	환급액		
			합계	원금	이자
지방세	2018	303,229	7,151	6,929	222
	2017	270,130	3,902	3,809	92
	2016	277,728	120,304	120,278	25

※ 일반회계 기준

- 최근 3년간 지방세 환급금 발생현황을 보면 2016년도 120,304백만원(이자 포함)으로 당시 담배소비세 전국 시·군 징수권을 양산시가 위임받아 안분한 118,213백만원(이자 포함)을 제외하면 자체 세입환급금은 2,901백만원이며 2017년도는 3,902백만원(이자 포함), 2018년도에는 7,151백만원(이자 포함)으로 점차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주요 사유별로 보면 행정기관 착오(이중부과, 과세자료 착오, 적용세율 또는 과세표준 착오 등), 납세자 권리구제, 이중 납부 등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 문제점 및 개선·권고사항

- 세입환급금 발생은 국세 경정으로 인한 지방소득세 감액, 자동차 소유권 변경 등 불가피한 사유도 있지만 이중부과, 과세자료 착오, 적용세율 또는 과세표준 착오 등 행정기관 착오로 인한 세입 환급금 다수 발생은 납세자들의 행정 불신과 민원을 발생시키는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 환급금 발생코드별 원인을 분석하는 등 대책을 마련하고 청구 가능일로부터 5년 이후는 청구권이 소멸되므로 안내문 개별 발송, 계좌번호 조회, 직접 통화 등 환급금을 돌려주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여 세입 환급금 발생 및 민원발생 소지를 최소화 될 수 있도록 권고합니다.

□ 예산총계주의 준수

○ 현 황

(단위:천원)

사업명	예산액	수령액	집행액
지진 옥외대피장소 정비	도 -	도 42,887	도 -

- 지방재정법 제34조에는 한 회계연도의 모든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세입은 모두 예산에 편입하도록 정하고 있어 이는 예산총계주의를 명문화 하고 있습니다.
- 지진 옥외대피장소 정비 도비보조금으로 2018년 11월 20일 교부된 자금에 대해 다음연도(2019년) 1회 추경 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 문제점 및 개선 · 권고사항

- 보조금은 예산 목적이 정해져 시달되며 사업비는 전년도 예산 편성 당시 시달된 보조금 교부 결정 통지에 의하여 예산을 편성하고 당해 연도에 보조금이 시달되면 간주처리 후 집행하고 차기연도에 정산 하는 것이 일반적인 사항입니다.
- 위와 같이 당해연도 11월에 보조금이 교부된 경우 예산편성 및 집행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나 향후에는 정확한 보조금 세입 추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 세출예산 사고이월 부적정

○ 현 황

(단위:천원)

부서	사업명	예산액	지출원인 행위액	이월액	준공 예정일	이월사유
하수과	원리 공공하수처리 시설증설사업(시설비)	409,000	409,000	238,835	2019.12	공기연장
	원리 공공하수처리 시설증설사업(감리비)	20,000	18,414	18,414	2019.12	공기연장
	양산시 하수도장비 기본계획 용역	300,000	300,000	300,000	2019.12	공기연장
	양산천유역 비점오염원 관리대책 시행계획 수립 용역	50,000	50,000	50,000	2019.8	공기연장

※ 2018년 사고이월 예산 : 79건, 28,755,520천원

- 사고이월은 『지방재정법』 제50조 제2항 제1호에 의하면 세출예산 중 회계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회계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와 그 부대경비에 대하여 다음 회계연도에 사고이월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상기 현황과 같이 사고이월 사유와 사업 준공 예정일을 살펴보면 회계연도 내에는 지출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아닌 준공기한이 다음연도 내에 예정되어 있는 경우로서 이는 『지방재정법』 제50조 제1항에 따라 명시이월 예산으로 편성하여 그 취지를 분명하게 밝혀 미리 지방의회의 의견을 얻어야 하는데도 지방의회의 승인 없이 부적정하게 사고이월로 처리 하였습니다.

○ 문제점 및 개선·권고사항

- 당해 연도에 편성된 사업예산에 대하여는 연초부터 면밀한 계획을 수립하여 당해 연도 내에 집행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함에도 매년 사고이월비가 과다 발생되고 있는바 천재지변, 재해재난 등 불가피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한 의회의 승인을 얻어 이월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 사업예산 운용 미흡

○ 현 황(예산현액 대비 불용액 30%이상)

(단위:천원)

부서명	사업명	예산 현액	집행액	집행 잔액	비율 (%)	불용사유
문화관광과	통도사 국장생석표 정밀실측	40,000	23,073	16,927	42	집행잔액
체육지원과	전국 및 도단위 체육대회 유치	110,000	71,500	38,500	35	유치무산
	여자배구단 보상금	985,980	683,848	302,132	30	집행잔액
	탁구팀 보상금	200,000	119,977	80,023	40	집행잔액
일자리 경제과	지역인재 고용 우수기업 지원	763,680	449,107	314,573	41	미채용 지원 신청을 저조
도로관리과	금산택지 보행로 설치	384,590	196,457	188,133	48	사업규모 축소
	새들교 하부 도색	120,000	85,115	34,885	30	집행잔액
(출)도시 건설과	금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	929,574	430,711	498,863	53	집행잔액
보건행정과	365 안심병동사업	48,000	24,000	24,000	50	집행잔액
농정과 (현동물보호과)	가축공제가입비 지원	40,000	1,112	38,888	97	집행잔액
	유기동물 입양지원	11,800	400	11,400	96	하반기 사업확정
	오파란 처리기 지원	45,000	27,000	18,000	40	사업포기자 (2명)
	산란계 농장 환경개선지원	112,000	13,440	98,560	88	하반기 사업확정

- 당해연도 사업예산에 대한 집행잔액은 일반회계 기준 96,792,231천원이며 그 중 대표적으로 30%이상 과다 발생 사업현황을 보면 총13건에 1,664,884천원입니다. 그 사유를 보면 집행잔액이 대부분이며 사업계획의 축소, 타 기관과의 중복, 국·도비 교부로 인한 재원변경 등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인재우수기업 지원 사업 외 3건은 2019연도 당초 예산에도 같은 금액의 예산을 편성 하였습니다

○ 문제점 및 개선·권고사항

- 예산을 확보하기 위하여는 사전에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타당성이나 효율성을 적극 검토하여 적정하고 합리적인 예산을 편성하여야 함에도 과다하게 불용액이 발생되었음은 매우 적절하지 못한 예산운영이라 판단됩니다.
- 불용사유를 분석해 보면 일반적으로 시설 사업의 경우는 공개경쟁입찰에 따른 잔액이 약 10~15% 수준이 적정하며, 인건비성 예산은 현원을 기준으로 인상분만을 감안하여 예산편성을 한 후 변동추이에 따라 예산액의 증·감 추산이 충분히 가능한데도 처음부터 과다하게 예산 편성하였음은 부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 추정예산에 사업비를 확보하여 사업추진시기 단축, 사업포기로 인한 예산 집행의 부진 등 기타 불용사유별로 보면 대부분 예산편성전과 예산편성 후에도 소관 업무에 대한 적극성과 작은 관심만 가져도 적정 예산을 편성할 수 있고 불용액도 최소화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건전한 재정운용을 위하고 합리적인 재원배분을 위해서는 적정한 예산요구와 예산수립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사업계획 수립 시 사전 정확한 수요예측이나 정보를 통해 실효성 있는 예산추계를 수립하여 예산을 편성하고 사업의 계획부터 마무리까지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사업의 관리로 불용액 절감을 위해 최선을 다하여야 할 것입니다.

□ 전액불용 예산 운용 부적정

○ 현황(10,000천원 이상)

(단위:천원)

부서명	세부사업명	예산액	집행액	불용액	불용사유
기획예산 담당관	의회 집행부 협력 강화 워크숍	10,000	0	10,000	집행사유 미 발생
사회복지과	홀로 어르신 공동 생활가정 설치	45,000	0	45,000	공모사업 대상부재
사회복지과 (現 아동보육과)	시립지역아동센터 설치지원	100,000	0	100,000	LH5단지 주민반대 사업무산
문화관광과	문화재 긴급보수비	30,000	0	30,000	집행사유 미 발생
공원과	중부동 완충녹지 환경개선(시설비)	20,000	0	20,000	주민의견 불일치로 사업 미 시행
	대방7차 공공공지 보행로 조성(시설비)	19,000	0	19,000	주민의견 불일치로 사업 미 시행
안전총괄과	쾌적한 청사관리	27,500	0	27,500	집행사유 미 발생
도로시설과	석계도시계획도로 (중3-1)개설공사	201,763	0	201,763	편입토지(한국도로공사) 용도폐지 절차 지연에 따른 보상금 지급시기 미도래
도로관리과	폭염 대책사업	25,000	0	25,000	집행사유 미 발생
건설과 (現 지역재생과)	미불용지보상	50,000	0	50,000	집행사유 미 발생
	한발대비 농업용 수 지원사업	40,000	0	40,000	집행사유 미 발생
양방향노화과	양방향노화 산학융 복합센터 운영지원	24,000	0	24,000	집행사유 미 발생
농정과	특용작물시설현대화 지원	20,000	0	20,000	사업대상자 신청포기
농업기술과	양산천 명품 꽃길 조성(인건비)	45,571	0	45,571	집행사유 미 발생

- 전액 미집행(전액불용)예산 사업 현황을 보면 총113건에 901,499천원이며 그 중 10,000천원 이상 사업은 14건에 657,834천원입니다. 주요 원인별로 보면 공모사업대상부재, 주민반대, 집행사유 미 발생 등 아주 다양하고 사업의 성격이나 내용별로 보면 매년 유사한 사업들이 반복적이고 관행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 특히, 주민편의사업으로 추진되어야 할 환경개선사업이나 폭염대책 사업 등이 전액 불용되는 사례나 단기간 고용의 성격이나 일자리지원사업인 꽃길 조성사업의 전액 불용되는 사례는 적기에 예산집행의 태만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당초예산이나 추경예산 편성 후 전액불용 발생이 예상되거나 확정시에는 그 다음 추경예산이나 정리추가경정 예산에 반영(감액)하여 예산 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매년 결산검사와 행정사무 감사시마다 지적이 되면서도 시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 문제점 및 개선·권고사항

- 예산에 편성된 사업은 그 규모나 사업비의 성격상 예산액의 많고 적음을 떠나 관련 업무에 소신과 사명감을 가지고 향후에는 어쩔 수 없이 법령에 의하거나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유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해당부서는 물론 총괄부서에서도 관리·감독 통합시스템(예산편성-집행-결산)을 마련하는 등 내실 있는 재정 운용을 하여 줄 것을 권고합니다.

□ 예비비 지출 제한 준수

○ 현 황

(단위:천 원)

구 분	예산액	지출 결정액(A)	지출액 (B)	이월액 (C)	집행잔액 (A-B-C)
합 계	14,332,892	1,601,304	1,171,527	287,799	141,978
일반예비비	4,455,306	756,253	746,235		10,218
재해·재난 목적예비비	9,877,586	845,051	425,492	287,799	131,760

※ 일반회계 기준

- 예비비는 『지방자치법』 제129조 및 『지방재정법』 제43조에 따라 지방자치 단체가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지출을 충당하기 위해 각종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탄력성을 부여한 제도입니다.
- 2018 회계연도 예비비 예산액은 일반회계 기준으로 일반 예비비가 4,455,306천원,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가 9,877,586천원으로 총14,332,892천원으로 편성하였고, 이중 일반 예비비는 5건에 756,253천원을 지출 결정하여 746,035천원을 지출 하였으며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는 5건에 845,051천원을 지출 결정하여 425,492천원을 지출하고 287,799천원은 이월 하였습니다
- 공원과의 근린공원 태풍피해 복구사업은 예비비 신청 시기나 사업의 성격상 이월이 불가피함에도 예비비 300,000천원을 지출 결정하여 용역비 12,201천원은 지출하고 공사비 287,799천원은 다음연도로 예산을 이월 처리 하였습니다.
- 자원순환과에서는 자원회수시설 산소제조 설비의 고장으로 인한 긴급수리비로 2018. 10. 30 일반 예비비 685,000천원을 지출결정 당시 자원회수시설 위탁비

운영을 위한 기정예산 잔액이 2,808,668천원이 있음에도 당해연도 말까지 소요액을 개략적으로 추산하여 부족분 685,000천원을 기정예산에 더하여 사용하고 171,461천원의 다소 많은 잔액을 발생시켰습니다.

○ 문제점 및 개선·권고사항

-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 계획수립기준』에 따르면 “다음연도로의 이월을 전제로 한 경비에 예비비의 지출은 하여서는 아니된다” 라고 예비비의 내재적 지출 제한을 예규로 명시하고 있음에도 예비비의 이월행위는 내재적 한계를 준수하지 않았다고 판단됩니다.
- 향후 예비비 사용에 대하여는 예측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경우에 대해서만 신중하게 검토하여 지출할 것을 권고하며 기정예산을 집행하듯이 이월 시키거나 사용하는 사례를 지양하고 관련규정 및 예비비의 지출한계를 준수하여야 할 것입니다.

□ 특별회계 정비 필요

○ 총 괄

- 현재 양산시는 공기업특별회계를 비롯하여 9개(공기업 2개, 기타 특별회계 7개)의 특별회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별회계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직영 기업이나 그 밖의 특정사업을 운영할 때 또는 특정자금이나 특정세입·세출로서 일반세입·세출과 구분하여 회계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에만 법률이나 조례로 설치할 수 있으며, 다만 목적세에 따른 세입·세출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별회계를 설치·운용하여야 합니다.
- 그러나 양산시 특별회계 중 일부 회계가 예비비 편성 비중이 높거나 소액의 순세계잉여금 만을 유지하며 수요 발생 시 일반회계에서의 전입금에만 의존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이는 별도 자금을 운영 관리하고자 하는 특별회계 설치 목적과 괴리가 있을 수 있으므로 관련 법령 등을 검토하여 특별회계 지속 여부와 사업 활성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습니다.

○ 세입 미수납액 발생(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지하수관리특별회계)

- 현 황

- 2018년 일반회계에서 의료급여특별회계 전출 누락으로 미수납액(25백만원)이 발생하여 이에 위 자금으로 경상남도에 반환해야할 시비부담금(25백만원)을 기존 집행 잔액에서 지출되었으며 의료 및 약사법 등 위반 및 상해요인 등에 따른 의료급여 부담이득금 미수납액(1,669백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 2018년 미수납액 전출금(25백만원) 2019년 제1회 추경예산 편성

- 지하수관리특별회계의 경우 지난연도 수입에서 미수납액(61백만원) 발생 하였습니다.

- 문제점 및 개선 · 권고사항

- 일반회계에서 의료급여회계 전출 누락으로 2018년 미수납액 전출금을 2019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지방재정법 제7조에 따른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 수감 및 소송 등 현실적으로 징수가 불가능한 미수납액에 대해서는 결손처분 등 적극적인 행정조치를 통해 미수납액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 또한, 특별회계 관리부서에서는 특별회계의 목적성과 필요성을 재검토하여 회계 존속기한을 연장하여 지속 운용할 필요성이 있는가에 대한 여부를 장기적인 관점에서 면밀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자수입 증대를 위한 자금의 효율적 관리 필요

- 현 황

(단위:천원)

회계명	세입과목	실제수납액	세출 집행잔액	잔액대비 이자율
주민소득지원 자금특별회계	예금이자수입	9,244	1,302,805 (예비비 없음)	0.7%
지하수관리 특별회계		55,405	4,394,028 (예비비 3,972,892)	1.3%

- 2018년 1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를 1.6%를 적용하고 있으며 위의 경우를 적용하였을 경우 91,000천원의 이자수입이 예상되며 이는 27,000천원의 추가적인 세입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문제점 및 개선·권고사항

- 양산시 재무회계규칙 제74조(자금운용)에서는 “유휴자금을 활용하기 위하여 당해 시 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 관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주민소득지원자금 특별회계의 경우 지출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자금에 대해서는 보통예금 보다는 정기예금 가입을 통해 이자 수익을 최대한 높일 수 있도록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하수관리특별회계 또한 예비비 지출잔액을 정기예금 가입을 통해 이자 수익을 높일 수 있도록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금 운용의 효율성 제고방안 마련

○ 기금 총괄

- 양산시 2018 회계연도 현재 운용중인 기금은 총 13종으로 기금은 특정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예산의 제약에서 벗어나 보다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하는 특정 자금입니다.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3조에 의하면 기금의 설치는 일반회계 또는 특별회계로 사업을 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만 설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양산시 현행 기금관리 상황을 봤을 때 일부 기금의 경우 목적대로 운용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에 따라 기금 총괄부서에서는 기금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아울러 기금관리기본법에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사업 추진에 있어 일반(특별)회계와 기금간의 효과성을 분석하여 꼭 필요한 기금만 존치(운용) 되도록 권고합니다.

○ 기금 활용도 미흡

- 자활기금 : 자활기금으로 2018 회계연도에서 집행한 사례는 예치금 1건에 불과하며 기존 융자한 사업은 자금회수 등 어려움이 있으므로 자활기금을 필요로 하는 대상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기금 활용 방안 재검토가 필요합니다.
- 장애인복지기금 : 장애인복지기금 기금용도에 맞는 지출계획 대비 집행되지 못한 사업비 46백만원이 존재합니다. 적극적인 사업 발굴 또는 조례 개정 등을 통한 활용방안 재검토가 필요합니다.

- **체육기금** : 체육기금 또한 2018년 지출계획 대비 55백만원 지출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선수 육성 및 체육진흥에 대한 적극적인 사업 발굴을 통한 활용 방안 재검토가 필요합니다.
- **투자유치진흥기금** : 2018년 경우 자치단체부담금 4백만원 지출한 것이 유일하며 2018년말 기금 조성잔액이 13백만원입니다. 현 자금으로 기금 용도에 맞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현저하게 자금이 부족한 실정으로 기금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활용방안을 재검토 해줄 것을 권고합니다.

○ 전통시장 주차장관리기금 용도 재검토

- **근 거** : 양산시 전통시장 주차장관리 및 운영조례
- **수입 재원** : 전통시장 공용주차장 요금, 예치금
- **용 도** :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 전통시장 경영개선 사업, 전통시장 시설 개보수 사업, 그 밖에 전통시장 주차장 관리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기금 운영기한** : 2020년 10월 30일
- **문제점 및 개선·권고사항** : 전통시장 주차장 관리기금 중 2018년 30,000천원 시설비 지출계획이 편성되어 있으나 전액 지출하지 못하였고 2019년 시설비 50,000천원 편성하여 남부시장 소화전 연결사업을 시행할 예정으로 위 기금 용도의 경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기금을 통해 중복 지원될 우려가 있으므로 기금의 존치(운용) 방안을 재검토 해줄 것을 권고합니다.

□ 성과보고서

○ 총괄

- 성과주의 예산제도는 예산요구, 예산편성 및 심의, 집행, 결산 과정의 틀에서 움직이고 예산 요구단계에서 성과계획서가 작성되고 예산편성 및 심의 단계에서는 예산과 성과의 연계과정이 이루어지며 예산집행 단계에서는 자율적 운영과정이 이루어지고 결산과정에서 성과보고서가 작성됨으로서 차기연도 예산편성시 반영하고자 고안된 제도입니다.
- 결산과정에서 작성된 성과보고서를 통해 성과관리체계 수립 및 운영 전반의 적정성 점검하고 이를 차기연도 예산편성 및 심의에 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 그러나 양산시 성과지표 235개 지표 중 정책사업 목표에 따른 성과지표 부적절, 성과계획과는 다르게 성과 보고된 사례, 성과계획에는 없지만 차후 예산을 편성하고 성과보고서를 미작성한 사례, 목표 타당성 검토 부족, 낮은 목표치 설정 등 성과계획서와 성과예산서 연계가 미흡한 점이 많았습니다.

○ 현황·문제점

< 성과달성 현황 >

전략 목표수	정책사업목표		성과달성			
	개수	지표수(A)	초과달성(B)	달성(C)	미달성	달성률 (B+C/A)*100
17	132	235	35	163	37	84.2

- 양산시는 전략목표 17개, 성과지표 235개의 성과계획서를 수립하였습니다. 성과보고서 작성 결과 전체 지표 235개 중 초과달성 35개, 달성 163개, 미달성 37개로 달성률 84.2%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성과지표 달성률 부진 사업현황(달성율 50%미만) >

부서명	성과지표	성과지표 달성현황			부진사유
		목표	실적	달성율	
문화관광과	지역축제 관람수	470,000	200,000	43%	관광객 측정 방법 변경으로 인한 실적 감소
환경관리과	당곡천 생태학습관 조성사업 예산 집행률	100	0	0%	실적 없음
도시개발과 (現 도시계획과)	도시개발사업 추진 실태 점검 추진율	0	0	0%	관심 부족으로 성과보고서 입력 누락
양방 항노화과	미래 산업 육성기반 구축사업 확보	0	0	0%	정부예산 미반영에 따른 사업 미확정
(출)복지 문화과	취약계층 지원율	100	0	0%	관심 부족으로 성과보고서 입력 누락
응상 보건지소	예방접종률 제고 통한 감염병 예방강화	29,880	13,746	46%	위탁 의료기관 접종으로 보건지소 내소 접종건수 감소

- 특히 일부 부서에서는 50% 미만의 실적을 보이고 있으며 원인으로서는 실적이 전혀 없는 성과계획서 수립, 사업이 확정되기 전 성과계획서 작성, 무관심에 따른 실적 미입력, 실적 감소 등으로 성과예산에 대한 부서의 이해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 성과지표 목표치 설정 미흡 >

성과지표(단위)	측정산식(방법)	목표대비 달성률	달성성과		
			‘16년	‘17년	‘18년
건의규제 등 제안건수(건수)	건의규제 등 제안 총건수	목표	35	35	36
		실적	45	165	86
		달성률(%)	129%	471%	238%
고용복지플러스센터, 일자리센터 상담, 알선 취업자수(명)	워크넷상의 취업자수	목표	1,010	1,166	1,224
		실적	3,600	2,990	4,179
		달성률(%)	356%	256%	341%
경남동부권 채용박람회 참가기업 수(개)	채용박람회 참가기업 수	목표	106	110	113
		실적	233	234	248
		달성률(%)	220%	213%	219%

- 일부 성과지표의 경우 최근 3년간 목표 달성률이 200%를 상회하고 있습니다.
최근 3개년 실적치가 200%를 상회함에도 과도하게 목표를 하향 설정하여
적극적인 업무 수행 없이 손쉽게 목표가 초과달성 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최소한 최근 3개년 실적의 105% 수준으로 목표치를 설정하고, 노력 여하에
따라 목표가 달성될 수 있도록 지표 및 목표의 수정, 변경이 필요하며
관련 예산 편성 시 이를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 성과지표 목표 타당성 검토 미흡 >

성과지표(단위)	측정산식(방법)	목표대비 달성률	달성성과		
			‘16년	‘17년	‘18년
주민지원사업 집행률(%)	지출액/예산액*100	목표	87	95	88
		실적	97	98.30	99.84
		달성률(%)	111%	103%	113%

- 전년도 목표 달성률이 103%였음에도 당해 연도 성과지표의 목표를 낮게 조정 하였습니다. 목표치를 설정할 때는 합리적인 근거를 가지고 명확하게 설정 하여야 함에도 낮게 설정한 이유를 보고서에 명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차후 도전적인 목표치 설계 또는 지표로 변경할 필요가 있습니다.
- 복지문화국의 경우 ‘시설운영비 지원 증가율’ 및 ‘지역아동센터 보조금 증가율’ 등 해당 부서의 업무 달성 노력 여부와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전년도 사업 예산액 대비 당해연도 사업 예산액 증가율을 성과지표로 사용하는 등 성과 지표를 부적절하게 설정한 사례가 발견되었습니다.

○ 개선 · 권고사항

- 위에서 열거한 사항들은 매년 반복되고 있는 실정으로 당초 성과계획서 수립 단계에서부터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이에 따라 전 부서에서는 예산 편성 시 성과계획서를 예산과 연계될 수 있도록 작성에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 또한, 업무 노력도에 따른 정확한 성과가 산출될 수 있도록 일부 산식 변경이 필요하며 미흡한 성과에 대해서는 수정예산 작성 시 재검토 될 수 있도록 총괄부서에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재정성과관리 제도는 예산의 투입에 대한 성과보고서인 만큼 예산과 무관한 성과지표는 예산을 투입하는 사업으로 과감히 변경할 필요가 있습니다.
- 결국 성과계획서가 제대로 작성되면 성과보고서는 그에 따라 신뢰성 있는 결과를 도출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따라서 올바른 성과지표 설정 및 성과지표에 따른 측정방법이 적절하게 될 수 있도록 권고합니다.

□ 공유재산관리 부적정(도로개설 후 미이관 잔여지 매입)

○ 현 황

공사명	토지소재지	지목	면적(㎡)	관리부서	현 황
석계도시계획도로 (중3-1호선)개설공사	상북면 석계리 307-226	전	60	도로시설과	완충녹지 내 토지
석계도시계획도로 (중3-1호선)개설공사	상북면 석계리 307-43	전	66	도로시설과	완충녹지 내 토지
시도2호선(내화마을회 관~북천암)정비공사 (소1-14호선)	원동면 화제리 2348-1	도로	28	도로시설과	잡종지
웅상 외산~매곡간 도시계획도로(중1-8호선) 개설공사 2공구	매곡동 962	전	113	도시건설과	잡종지

- 2017년 ~ 2018년도 도로 개설후 잔여지 보상현황을 보면 총 16건중 3건은 관리 이관하였고, 5건은 공사 미준공, 4건은 관리 이관 대상이 아니며, 4건은 관리이관 대상이지만 이관되지 않았습니다.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1조(용도의 변경 또는 폐지)에는 “행정재산의 용도를 변경하거나 폐지하려는 경우와 일반재산을 행정재산으로 용도변경하려는 경우” 는 제16조에 따른 공유재산심의회 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되어있고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8조(용도의 변경 또는 폐지)에는 법 제11조 제1호 “행정재산이 사실상 행정목적으로 사용되지 않게 된 경우 그 재산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그 용도를 변경하거나 폐지 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 또한 『양산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시행규칙』 제2조 제2항에는 “시유재산은 본청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및 보존재산은 업무주관과장” 또는 제8조에는 “재산관리관이 다른 재산관리관 소관의 재산을 이관하고자 할 경우에는 서로 협의하여 그 사유와 재산관리대장 등 관련서류를 갖추어 총괄재산관리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 있으므로 공사가 완공되면 즉시 행정재산의 경우 목적에 맞게 공유재산 심의회를 거쳐 시장의 결정을 받아 재산총괄관리관이나 업무주관과에 이관하여야 함에도 상기 표의 4필지에 대하여는 이관 관리 되지 않고 있습니다.

○ 문제점 및 개선 · 권고사항

- 도로시설과에서는 상북면 석계리 307-226번지(전, 60㎡)와 석계리 307-43번지(전, 66㎡)는 도시계획상 완충녹지이므로 공원과로, 원동면 화제리 2348-1번지(도로, 28㎡)는 도로 기능과 무관하면 회계과로 이관하고,
- 웅상출장소 도시건설과에서는 매곡동 962번지(전, 113㎡)가 도로 기능과 무관하면 회계과로 이관하여 공유재산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 양산시의 경우 도로개설 뿐 만 아니라 수년전부터 많은 사업을 시행하면서 이러한 잔여지 보상토지가 더 많을 것이며, 앞으로도 더 발생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재산 총괄부서에서는 정기 또는 수시로 공유재산의 관리 실태를 전수 조사하여 관련 법규에 따라 양산시 모든 공유재산을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주실 것을 권고합니다.

3. 수범사례

□ 발달장애인 민·관 지원 협의체 구성을 통한 예산절감

- 발달장애인의 경우 선천적 중증장애가 대부분으로 어린 시기에 시작하여 평생 동안 지속되는 장애를 가지고 있습니다.
- 발달장애인 정책 수립 단계부터 정책수요자인 민과 관이 정책 과정 전반에 함께 참여하여 수요자 중심 정책을 펼쳐 나갔습니다.
⇒ 정책의 기본 계획 수립에 따른 용역을 실시하지 않고, 정책수요자인 민과 관이 함께 정책을 수립함에 따라 용역비 절감(20백만원)과 수요자가 공감하고 참여할 수 있는 정책 수립으로 서비스 만족도 제고를 위해 노력 하였습니다.
- 주요 성과로는 발달장애인 부모, 장애인복지시설 관계자, 행정기관 등이 함께 정책을 개발하고자 발달장애인 민·관 지원 협의체 구성 운영하여 전국적으로 5년간 등록 장애인은 약 3.4%정도 증가되는 것에 비해 발달장애인은 27.6% 증가 (매년 5.5% 증가), 양산시의 경우 5년간 발달장애인 약 40%(매년 8%) 증가 하였습니다.

< 양산시 발달장애인 현황 >

구분	장애인수(명)				발달장애인수(명)			
	2013.12월	2018.12월	증감	증감율	2013.12월	2018.12월	증감	증감율
전국	2,501,112	2,585,876	84,764	3.4%	196,999	233,620	36,621	18.6%
경상남도	179,530	186,016	6,486	3.6%	14,185	16,746	2,561	18.1%
양산시	12,327	15,726	3,399	27.6%	1,031	1,447	416	40.4%

※ 양산시 발달장애인 민·관 지원 협의체 구성 및 운영(2018년 9월, 17명)

- 2018년 7월 발달장애인 부모 초청 간담회 개최, 민·관 지원 협의체 필요성 제기
- 발달장애인 복지향상 기본계획 수립 의견 제시
- 발달장애인 복지서비스 제공 및 복지시설 확충 등 논의

□ 주거급여 확대 지원으로 행정서비스 만족도 향상

○ 주거급여 수급자 현황

(단위:가구/명)

구 분	2018년 7월말	2018년 12월말	증가율
주거급여 수급자	5,482/7,785	6,262/8,857	14.2% (780/1,072)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급여체계는 수급자의 욕구에 따라 급여를 개별화하여 지원하고 있으며 그 동안 실제 부양사실이 아닌 잠재적 부양가능성(부양능력)을 따지는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인하여 비수급 사각지대가 발생해 왔으나, 2018년 10월 1일 부터는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어 주거가 불안정한 저소득층 등 취약 계층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양질의 주거 수준을 확보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 이에 주민생활지원과에서는 신청 대상자가 홍보부족으로 제도를 알지 못해 신청이 누락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2018.7월부터 각 읍면동 및 시가지에 현수막 게첨, 홍보 전단지 비치, 시 홈페이지·전광판 홍보, 복지대상자 신청자 중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책정제외된 이력이 있는 3,100여가구에 안내문 발송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제도 홍보에 철저를 기하였고, 2018.10월부터 주거급여 지급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8월부터 사전신청 접수 및 보조인력 10명 채용하여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배치하였습니다.
- 이를 통해 2018.12월말 주거급여 수급자수가 7월 대비 14.2% 증가하여 780가구 1천여명의 지역주민이 주거비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으며, 임차료 지원을 넘어 정부양곡 지원, 통신비 감면, 종량제봉투 지원, 도시가스요금감면, 문화누리카드 지원 등 다양한 감면제도 및 복지서비스 이용으로 저소득 취약계층의 삶의 질 개선에 도움이 되는 등 주거급여 신청대상자에 대한 적극적인 주거급여 지원으로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통해 행정만족도 향상에 기여 하였습니다.

□ 업무추진비 공개 및 집행에 관한 규칙 제정을 통한 회계투명성 강화

○ 현황 및 주요 내용

- 업무추진비의 집행내역 공개에 대한 제도적인 틀을 마련함으로서 불합리한 업무추진비 집행의 투명성을 높이고자 『양산시 업무추진비 공개 및 집행에 관한 규칙』은 입법예고 및 조례규칙심의회 심의·의결을 거쳐 경상남도 최초로 2018년 10월 11일 공포 및 시행 하였습니다.
- 규칙의 주요 내용은 업무추진비 공개방법 및 공개내용을 규정하고 있으며 집행일시, 집행목적, 집행장소, 집행대상, 집행금액 등의 내용을 세부적으로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업무추진비 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하였습니다.
- 뿐만 아니라 시장의 업무추진비 집행사항을 매월 일상감사 의뢰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외에도 업무추진비로 집행할 수 없는 내용을 세부적으로 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업무추진비 집행에 있어 뚜렷한 기준을 제시 하였습니다.
- 또한, 2019년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 시책업무추진비를 정책사업 별로 분산 편성함으로써 사업별 집행 취지로 맞추어 업무추진비를 집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추진 결과

< 업무추진비 집행현황 >

(단위:천원)

구 분	2018년(1분기)	2019년(1분기)	증 감 액	전년대비 비율
시책업무추진비	77,989	39,903	△38,086	△48.9%

- 상기 도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듯이 전년도와(1분기 기준) 비교하여 시책 업무추진비는 38,086천원 지출이 감소(전년대비 48.9%) 하였으며, 이를 통해 불필요하게 지출되었던 관행이 근절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 업무추진비 공개 및 집행규칙 제정을 통해 일부 불투명한 지출 관행을 근절 시켰으며, 상세한 공개내용을 통해 시민들로부터 신뢰받는 행정을 구현할 수 있었습니다.

□ 일반회계 자금의 효율적 운용을 통한 세수 증대

○ 최근5년간 공공예금 이자수입 현황

(단위:백만원)

구 분	세입결산액		공공예금이자수입	
	금 액	전년대비 (증·감액/비율)	금 액	전년대비 (증·감액/비율)
2018년	1,159,696	82,124 / +7.6%	3,212	1,171 / +57.3%
2017년	1,077,572	116,741 / +12.1%	2,041	389 / +23.5%
2016년	960,831	150,997 / +18.6%	1,652	△387 / -19%
2015년	809,834	56,436 / +7.4%	2,039	△145 / -6.7%
2014년	753,398		2,184	

※ 6개월 정기예금 이율 : 1.45%(2018년), 1.25%(2017년), 1.35%(2016년), 1.75%(2015년)
2.45%(2014년)

- 매년 세입결산액은 7.4%~12.1% 증가 하였으나 2016년까지는 이자수입은 감소한 부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17년에는 전년대비 23.5% 이자수입이 증가하였고 2018년에는 전년대비 무려 57.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 세입결산액이 완만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공공예금 이자수입은 다소 해마다 들쭉날쭉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16년까지 금리가 다소 낮아진 영향도 있지만 이자 수익이 해마다 감소하였으며 2018년부터는 이자수익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 그 원인으로는 2018년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개정에 따라 징수부서에 있던 자금관리 업무가 회계부서로 이관되면서 자금운용 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세입과 세출의 추계 일정을 파악하여 보통예금을 최소화 시키고 2018년 8월 이후 최대한 장기 정기예금(1년, 연1.6%) 가입을 통해 이자 수익을 극대화 하고자 하였습니다.
- 뿐만 아니라 2019년부터는 부서별 일상경비 집행기준을 1건당 3,000만원에서 200만원 이하로 대폭 교부 제한하여 각 부서의 일상경비 통장(보통예금) 잔고를 최소화 함에 따라 발생된 유휴자금을 정기예금에 예치함으로서 2019년에는 더 높은 이자수익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 전년대비 일상경비 교부현황 >

(단위:백만원)

구 분	2018년 1분기	2019년 1분기	증감액	전년대비
일상경비 교부액	7,427	6,013	△1,414	△19.1%